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71

발의연월일: 2020. 8. 11.

발 의 자:이종배・이종성・김정재

조수진 · 김형동 · 이 영

최승재・金炳旭・추경호

윤영석·강대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충주, 제천,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서, 이 3개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 8,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함.

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 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, 냉해, 성장장애, 주민 건강 피해,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.

현행법은 이렇게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,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·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6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, 출연금의

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·간접적인 피해액에 미 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4조제2항). 법률 제 호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4조제2항제2호 중 "100분의 20"을 "100분의 2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	제44조(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
원) ① (생 략)	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댐관리청, 댐사용권자나 생	②
활용수댐·공업용수댐의 수도	
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	
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	
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	
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전년도 생활용수 · 공업용	2
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「한국	
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	
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	
가를 곱한 금액의 <u>100분의 20</u>	<u>100분의 22</u>
이내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